

# 기안 용지

(전화번호 460 )

전경결규정 27 조 2 항  
경칩국장 전경사함

분류기호 문서번호	경무181-				
처리기간					
시행일자	77. 9.				
보준년한					
부속 기 관	부속장	<b>9월 9일</b> <b>경</b>		협	법무담당관 심사필
	경무과장				
	기획과사경장				
기안서일자	경외김현수	<b>MM</b>		조	
경 수 일 조	내부결재		통 제		
개 목	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 고시 9안				
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별첨한 같이 함등 자동차 및					
특수 자동차의 통행 제한 모시를 정한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					
첨부: 1. 개정안 1부					
2. 개정안 1부					
3. 제정안도 1부 곁.					
					성 서
					관 인
					발 송

## 개 령 사 유.

교통여건의 급증과 도심권 및 부도심권의 차량과턴  
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정체를 방지하여 도시기능의  
적상화를 기하고 정체없는 교통류(交通流)를 유지  
함에 있음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보심사	1977.9.12	제 283호
담당자	법제국장	법무담당관

##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 고시.

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7. 9. 12. 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1. (통행제한)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차종별, 일별, 시간별,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제한내용

차 종	제한 시간	통행 제한 지역	비 고
3.5톤 이상 화물 자동차	07:00 ~ 22:00	도심권 및 부도심권의 통행을 제한한다.	
1.5톤 이상 3.5톤 미만 화물 자동차	07:00 ~ 10:00	상 도	
	17:00 ~ 20:00		

나. 제한지역의 도심권 및 부도심권은 다음과 같다.

① 도심권

㉠ 시청중심 반경 5KM내의 교통압력이 가중되는 반경 7KM내의 다음도로

제한강교 북단 ~ 강변4로 ~ 서울대교 북단 ~ 강변4로 ~ 제2한강교 북단 ~ 서교동 ~ 동교동 ~ 연혁입체교차로 ~ 홍은동로터리 ~ 세검점3거리 ~ 북악터널 ~ 정릉입구3거리 ~ 길음교 ~ 미아3거리 ~ 월암교 ~ 종암동 ~ 홍릉입구3거리 ~ 과학기술연구원 앞 ~ 쾨경로터리 ~ 시조사앞3거리 ~ 산업대입구 ~ 전릉로터리 ~ 신답로터리 ~ 사근동 ~ 경찰병원입구4거리 ~ 성동서앞 ~ 한양대앞 ~ 성동교 ~ 성동교연결 강변2로 (응비교) ~ 제3한강교 북단 ~ 잠수교 북단 ~ 강변3로 ~ 제1한강교 북단 연결지점간.

㉡ 제1한강교 통행제한

제1한강교는 1.5톤 이상 전하를 차량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한다.

(가) 강변 2, 3, 4로 및: 개2한강교~서교동~동교동~연희입체교차로~  
 흥면교~홍은R~북악터널~정릉~미아3거리간 도로는 09:00~  
 10:00, 19:00~20:00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한다.

(2) 부도심권

영등포구중 도시기능의 집중지역인 다음도로

- (가) 문래동로하리 ~ 구구청로하리간
- (나) 역전 ~ 시장로하리 ~ 신화역앞로하리간
- (다) 구구청로하리 ~ 시장로하리 ~ 남도극장앞 (철길) 간
- (라) 구구청로하리 ~ 천호처입구간
- (마) 구구청로하리 ~ 0B ~ 무선국교앞간
- (바) 구구청로하리 ~ 선길 ~ 대방로하리 ~ 제1한강교방단

2 (예외유점) 통행제한 제외 원자 및 차량은 다음과 같다

- 가 긴급자동차
- 나 제한구역내 통행허가증을 소지한 차량
- 다 화재사건 제외관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보일배  
 기에 통행할 것을 권고하여 알린다

3. (정기노선 화물차량) 정기노선 화물차량은 도심권 및 부도심권  
진입을 전면 통제한다.

② (제지~~24~~) 서울특별시 <sup>부</sup>고시 제 151호 (76.6.29)는 이를  
제지한다.

① (시행령) 이 고시는 1977. ~~7.10~~<sup>10.1</sup>부터 시행한다.

# 貨物車輛 統制区域

